

행정자치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

내 용

「소방공무원징계령」 제10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‘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’ 등에 따라 징계 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「소방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의2에 따르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결과통보를 받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1. 공소권 없음 결정, 기소중지 결정, 또는 참고인중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,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
2. 기소유예 결정,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

그런데, 강원도소방○○, ○○소방서, ○○소방서, ○○소방서, ○○소방서에서는 [표]와 같이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으로부터 ‘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처분 통보서’를 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, 징계의결 요구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무원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.

[표] 강원도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내역

비위자			범죄사실 통보결과		판결결과	처분결과	비고
소속	직급	성명	수사기관 통보일	범죄내용			
소방○○	○○○	○○○	2012.12.2.	재물손괴 (타 차량 손괴)	기소유예	훈계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3.4.19.	도박(홀라)	기소유예	훈계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3.7.15.	상해	기소유예	훈계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3.9.17.	도박(인터넷)	기소유예	훈계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3.9.12.	재물손괴 및 업무방해	구약식	훈계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3.11.11.	자동차관리법 위반	구약식 (벌금70만원)	훈계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3.12.31.	재물손괴 (타인 물건 단사용)	구약식 (벌금50만원)	주의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5.6.30.	음란물 유포	구약식 (벌금200만원)	훈계	
○○소방서	○○○	○○○	2015.11.23.	음란물 유포	기소유예	훈계	

* 자료 : 강원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

‘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’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